

RI판매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

본 협회에서는 국내 RI 판매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4일경 9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. 본고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현행제도 및 실정을 분석하였으며, 향후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할 것이다.

1. RI판매허가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

건의사항	현행제도
○ 협회에서 RI판매업 허가 요건을 심의후 접수하는 것이 좋겠음.	○ 원자력법 시행령 제 323 조 제 1 항에 의해 RI 판매 허가 심의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.
○ RI 판매허가량에 따라 소량을 취급하는 업체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방사선 취급 일반면허 소지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주기 바람.	○ 원자력법 제 72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86 조제 3 항 규정에 의거 판매업자는 방사선 취급감독면허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을 개정토록 정부에 건의 필요.
○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에 있어서 다음같이 구분하여 줄것. 1) 소량판매업자 : 방사선 취급자 일반면허 2) 대량판매업자 : 방사선 취급자 감독면허	-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86 조제 3 항 1호 나목의 내용을 방사능량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구분하여 선임할 필요가 있음.

2. RI수입판매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

건의사항	현행제도
○ RI수입 사전 신고제도를 사후 보고도 대체 요망	○ 수입신고를 사후보고로 대체할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많으므로 현단계에서는 개선이 어려움.
○ 협회에 중앙전산 System을 설치하여 판매업체와 회원사간의 업무연계를 효율적으로도 수행하고, 회원사들의 정기검사 대체에 대한 업무도 병행토록 개선요망	○ 향후 판매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중앙전산 System을 개발토록 노력할 것이며, 정기검사의 대행업무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많은 검토를 요망
○ RI수입신고시 서류접수와 신고 필증 교부와 시간간격이 있으므로 협회를 2회 방문하게 되므로 FAX로 서류를 접수 한 후 검토 해서 본 서류접수와 동시에 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	○ FAX로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문제는 단순히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며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이 어려움. ○ 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업무연계 체계를 확립한 후 양기관에 중복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을 간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인력 및 경제적여건의 해소가 선결과제임.

전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I수입판매 후 협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판매량을 양기관에 보고하는데 업무간소화 도모를 위하여 한 기관에만 보고토록 제도 개선 요망 	

3. 원자력 연구소가 직접 RI를 생산, 판매하는데 대한 문제

전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자력연구소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판매업체를 통해서 판매할 것.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격과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에 차등을 두어야 함. ○ 국산 RI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판매업체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함 제품의 다양화를 요망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차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국내생산품은 RI 판매업 전문업체를 통하여 판매토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. ○ 한국형 다목적 연구로가 가동되면 품질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4. RI 폐기물 수거 및 운반행정에 대한 의견

전의사항	현행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종별 폐기 기준 설정을 요망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단반감핵종(TC-99m, TL-201, Ga-61등)은 일정기간 경과후 자체폐기 2) 방사능량이 거의 없는 물질은 빼고 방사능오염이 많은 부분만을 수거토록 규정해야 함 ○ 액체로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체적으로 불합리 함. ○ RI폐기물 수거, 운반 업무의 일원화 필요(폐기물의 분류, 봉인, 수거) ○ RI 폐기물 관리비용 국고에서 지원 ○ 판매업체가 보관중인 RI폐기물도 수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망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자 인수거부로 보관중인 방사성 동위원소-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핵종별 폐기기준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 중이며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것으로 사료됨. ○ 액체 폐기물중 무기용액은 희석방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기폐액은 별도로 수집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인도토록 규정되어 있음. ○ RI폐기물을 관리비용은 92년도까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원되었으나 93년부터는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생자가 직접 부담토록 할 예정임. ○ 폐기물 수거시 판매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RI폐기물도 수거토록 할 계획임.